

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(2022. 11. 30.)
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.

2022년 12월 2일

목포시의회의장 문 차



목포시의회 규칙 제12호

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

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81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</p> <p>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